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16. ~ 11. 25.)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를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이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관계 기관의 장의”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그 의견 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한

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3제2항”을 “제2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 및 노동”을 “환경, 노동 및 지방행정”

으로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u><후단 신설></u>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 ----- ----- ----- ----- ----- ----- ----- ----- ----- ----- 통보해야 -----. <u>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	② ----- ----- ----- -----

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
 (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
 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신설>

----- 경우
이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회등의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
 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그 의견 또
 는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
체계 구축)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
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

한 사항의 검토·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3 · 제24조의4 (생략)

제24조의4 · 제24조의5 (현행 제24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의3(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조의3 및 제24조의4와 같음)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 제24
조의4제2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단서 삭제>

<삭 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⑥ (생략)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 -----

----- 환경, 노동 및 지방행정 -----

있다. 제29조의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생 략)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 제29조의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 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6543